



제422회국회(임시회)
제 1 차 국 방 위 원 회

군용비행장 ·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군용비행장 등 운용 부대에 민관군 협의체를 두도록 규정〉

■ 홍기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6301호)

2025. 2.

국 방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류 승 우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※ 참고자료	6
1. 기본계획 중 민관군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	6
2. 비행장·사격장별 민관군 협의체 구성현황	8
3.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(동 법 제20조 및 제21조)	13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홍기원 의원 등 17인
2. 발의연월일 : 2024. 12. 9.
3. 회부연월일 : 2024. 12. 10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.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부대 단위의 ‘민관군 협의체’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음.

그런데 민관군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,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2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에 ‘민관군 협의체’를 두도록 규정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려는 것임.

[신·구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21조의2(민관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) 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에 민관군 협의체(이하 “민관군협의체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민관군협의체는 관할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그 정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③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의 장은 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훈련의 도입 등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민관군협의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개정안의 취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을 운용하는 부대에 관한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이 그 정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된 ‘민관군 협의체’를 두도록 의무화하고, 이를 통해 야간 훈련의 도입 등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,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.

□ 현행법률은 소음 방지 등과 관련한 ‘민관군 협의체’ 구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작성하는 “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”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내용에(참고자료 1 참조),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 역할 및 주요 작전 등의 사전 설명 등을 위한 목적의 민관군 협의체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

민관군 협의체 구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경우, 주민들의 의견 개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
또한, 현행 민관군 협의체 운영 실적이 취지와는 달리 다소 저조하다는 점에서 법률에 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면 협의체 운영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(참고자료 2 참조).

□ 다만, 개정안에서는 ‘민·관·군 협의체’를 통한 의견 수렴 대상이

‘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 훈련의 도입 등’이고, 해당 부대의 장은 협의체의 의견이 ‘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

‘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 훈련 등’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, 주민들 의견의 타당성 판단 권한을 해당 부대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(안 제21조의2제3항), 해당 부대의 장이 동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또한,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체의 명칭을 보면 ‘민·관·군’ 세 영역의 인원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인데, ‘민·관·군’ 중 ‘관(官)’과 ‘군(軍)’의 영역에는 어떠한 인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,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여해야 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률에서 어느 정도 구성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.

□ 국방부는 동 법에 따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이의신청 등 소음보상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¹⁾, 민관군

1)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)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,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0조(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.

제21조(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.

협의체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(참고자료 3 참조).

또한,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‘소음을 유발하는 훈련 및 야간훈련 도입 등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’는 군사 작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제한될 것이라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309

[참고자료 1]

[기본계획²⁾ 중 민관군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]

<민·관·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활성화>

□ 추진배경

- 소음을 포함한 예하부대 단위의 각종 현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관할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 필요
- 주요작전이나 훈련등에 따른 사전설명, 다발민원 등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, 지역 현안 등을 공유

□ 추진방향

-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접촉점을 유지하고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지역 단위로 구성하여 운영
 - *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유대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, 민감한 사안이나 중대한 현안 등은 별도 또는 상급 기구 등에서 논의
- 지역주민과 관할 지자체공무원은 필수 참여토록 하되 주민은 가능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토록 유도

□ 주요 추진내용

-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부대 단위의 ‘민·관·군협의체’를 구성하고 부대 실정에 맞게 주기적으로 운용

2) 2021~2025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(국방부고시 제2020-42호)

- 협의체를 통해 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관련 정보 상호 공유
 - 소음영향도 조사, 소음측정, 주민보상 등 협조·논의
 - 소음 저감을 위한 활동 및 노력 등 홍보, 공유
 - 주요 작전이나 훈련 등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안내
 -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상호 해결방안 논의
 - 각종 대민지원활동, 행사 등에 관한 협조, 논의
 - 기타 일상적 업무의 소통 창구로 활용 등
- 제반사항 정비 등을 거쳐 '21년도 하반기부터 구성·운영
 - * 협의체가 기 구성된 부대는 재정비(필요시) 등을 통해 지속 운영

[참고자료 2]

[비행장·사격장별 민관군 협의체 구성현황]

(육군) 각 군단별로 구성은 되어있으나(수도군단 제외), 현안이 발생한
경우에 대상 비행장 또는 사격장을 안전으로 협의체 운영

(공군) 비행단 또는 사격장별로 구성 및 운영

(해군·해병) 공동 구성 및 운영 (해군 포항비행장 및 해병 항공단)

- 비행장

구 분	기 지	운영실적 여부	
		○ (14개)	X (30개)
1	대구비행장	✓	
2	포항비행장	✓	
3	사천비행장		✓
4	평택비행장		✓
5	군산비행장	✓	
6	수원비행장	✓	
7	성남비행장	✓	
8	강릉비행장		✓
9	원주비행장	✓	
10	오산비행장		✓
11	광주비행장		✓
12	예천비행장	✓	
13	청주비행장	✓	
14	충주비행장	✓	
15	서산비행장	✓	
16	진해비행장		✓
17	성무(청원)비행장	✓	

구 분	기 지	운영실적 여부	
		○ (14개)	X (30개)
18	고양(수색)비행장		✓
19	포천비행장		✓
20	가남리비행장	✓	
21	양구비행장	✓	
22	속초(양양)비행장		✓
23	조치원비행장		✓
24	이천비행장		✓
25	논산비행장		✓
26	목포비행장		✓
27	부평비행장		✓
28	파주비행장		✓
29	가평비행장		✓
30	이동비행장		✓
31	지포리(군탄리)비행장		✓
32	하남비행장		✓
33	양주(신산리)비행장		✓
34	남양주(덕소)비행장		✓
35	춘천비행장	✓	
36	화천비행장		✓
37	홍천비행장		✓
38	현리비행장		✓
39	용인비행장		✓
40	금왕비행장		✓
41	영천비행장		✓
42	김포비행장		✓
43	전주비행장		✓
44	평택(포승)헬기장		✓

- 사격장(대형화기)

구 분	기 지	운영실적 여부	
		○ (9개)	X (64개)
1	칼 직사공용화기 사격훈련장		✓
2	안영권 직사공용화기 사격훈련장		✓
3	객현리 직사공용화기 사격훈련장		✓
4	금파리 공용화기 사격훈련장		✓
5	노야산 사격훈련장		✓
6	포병 사격훈련장(직천C진지)		✓
7	무건리사격장	✓	
8	영바우 사격훈련장		✓
9	쌍용 전차전술/사격훈련장		✓
10	7사단 백마골(표적지) 포병 사격훈련장		✓
11	포병사격훈련장(피앙골)		✓
12	포병사격훈련장(서화2리)66		✓
13	포병사격훈련장(동개동)		✓
14	포병사격훈련장(천도리)		✓
15	포병사격훈련장(응골)		✓
16	포병사격훈련장(서화1리)		✓
17	직사공용화기사격훈련장(월운리)		✓
18	천미리 표적지		✓
19	대암산 표적지		✓
20	공용화기사격장(직사+박격포)(원당리)/독골		✓
21	포병사격훈련장(돌산령)		✓
22	포병사격훈련장(이목정)		✓
23	백두과학화전투사격훈련장		✓
24	오소령 포병사격 표적지		✓
25	학야리 전차포 사격훈련장		✓

구 분	기 지	운영실적 여부	
		○ (9개)	X (64개)
26	총용 합동훈련장 / 선유실리 포병사격장		✓
27	지포리(박승일) 전차포 사격훈련장		✓
28	승진 과학화훈련장		✓
29	문혜리(D) 포병 사격훈련장	✓	
30	동막리(M) 포병 사격훈련장	✓	
31	담터(철풍) 포병 사격훈련장	✓	
32	문혜리(C) 포병 사격훈련장	✓	
33	송호동(김풍익) 포병 사격(전술)훈련장	✓	
34	용화동 표적지	✓	
35	백골 종합훈련장		✓
36	심재 사격훈련장		✓
37	다락대 과학화 훈련장		✓
38	매봉산 종합훈련장		✓
39	꽃봉 포병 사격훈련장		✓
40	95~96진지 포병 사격훈련장(부흥동)		✓
41	장산 사격훈련장		✓
42	총용 박격포사격 / 공용화기훈련장		✓
43	신불산 박격포사격훈련장 / 공용화기		✓
44	총경 직사공용화기사격훈련장		✓
45	함안 직사공용화기사격훈련장		✓
46	교육사-1-A001, A002, A007 백일사격장		✓
47	교육사-1-A003 박격포 사격훈련장		✓
48	교육사-1-B001 포병사격 훈련장 (수련산)		✓
49	교육사-1-B002 포병사격 훈련장 (수포)		✓
50	교육사-1-C001 전차포 사격훈련장		✓
51	수방사-1-D001 안흥 대공무기사격훈련장		✓
52	특전사-1-B001~8 직사공용/개인화기사격훈련장		✓

구 분	기 지	운영실적 여부	
		○ (9개)	X (64개)
53	영평훈련장		✓
54	거저울 사격장		✓
55	과학화전투훈련장		✓
56	여주사격장(R-17)		✓
57	낙동사격장(R-81)		✓
58	미여도사격장(R-104)		✓
59	필승사격장(R-110)	✓	
60	웅천사격장(R-111)	✓	
61	대천사격장(R-97)		✓
62	수성사격장		✓
63	철포대공사격훈련장		✓
64	산서사격장		✓
65	제병협동훈련장(진강산)		✓
66	석모 즉각조치 사격장		✓
67	어리골소초 145c		✓
68	공지종합사격장		✓
69	장골323v/c		✓
70	사향포322v/c		✓
71	연화리321v/c		✓
72	방공 11진지		✓
73	구리동 해상 사격장		✓

[참고자료 3]

[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(동 법 제20조 및 제21조)]

구 분	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(위원장 포함 9명 이내)		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
중앙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	<u>위원장:</u> 국방부 차관	<u>위원:</u> - 기획재정부,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- 소음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- 소음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- 판사, 검사,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- 소음 분야 전문 지식 및 경험 풍부한 사람 (5명 이내)	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.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.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.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지역소음 대책 심의 위원회	<u>위원장:</u> 부시장· 부군수· 부구청장	<u>위원:</u> - 시·군·구의 5급 이상 공무원 (3명 이내) - 소음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- 소음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- 판사, 검사,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- 소음 분야 전문 지식 및 경험 풍부한 사람 (5명 이내)	1. 보상금 지급대상,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.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